



PL기획특집

26

- I. PL에서 제조물의 범위
- II. 위험성 감소를 위한 안전설계의 중요성
- III. 악의·고의·작위
- IV. PL에서 민법규정의 적용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민사법적 특별법이다.

이 특별법은 제조업체 등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간 전기제품 '안전21'은 PL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관련 업체들이 PL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사태에 적절한 예방책과 또 사후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주 -



PL에서 제조물의 범위

■ 글 / 주태중 부시장 가나 MT(주)

유체물(有體物: materials)은 형체가 있으면서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로, 무체물에 대(對)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체물(無體物)은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이다. 법률에서 무체물(無體物)이란 음향(音響) · 향기(香氣) · 전기 · 빛 · 열(熱) 등과 같이 유형적(類型的) 존재를 갖지 않은 것을 지칭한다.

민법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하여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즉 열 · 빛 · 원자력 · 풍력 등의 에너지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체물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밀해서 유체물(有體物)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를 가지는 물건이다. 고체 · 액체 · 기체 등과 같이 우리의 오관(五官: five organs of sense)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인 물리적 의미에서의 존재인 물질을 말한다고 이미 진술한 바 있다.

구민법은 물건을 유체물에 한하였으나, 현행 민법은 전기 · 열 · 광(光) · 원자력 · 풍력(風力) 등의 에너지 이른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도 모두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動力:motive powers)은

재물(財物)로 간주한다고 하여 도전(盜竊) 등을 절도죄의 객체로 취급하고 있다.

관리(管理)란 사법상, 재산의 소유에 대하여 재산에 관한 보존 · 이용 · 개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과 대립되는 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가 경제통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업 또는 물품을 지배하는 작용을 말한다.

또한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기업 또는 공물(公物:government property)을 경영하거나 유지하는 작용을 지칭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 또는 수입과 지출을 보관하고 계산하는 작용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행위(管理行爲)는 사법상, 처분행위에 대한 개념으로 재산을 보관하여 그 경제적인 용도에 적합하게 응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보존행위 · 이용행위 · 개량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주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이를테면 공공복리의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공물관리나 사업경영 등의 비권력적 행위를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 1일부터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제조물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각국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PL법에서 미국과 같이 제조물

의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제2조는 제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다.

그 중에서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PL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산의 개념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법상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산의 범위에 해당해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전기에 대해 제조물임을 부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용이나 소비자를 위해 상업적으로 공급된 개인용 유체재물을 말한다. 그 외의 부동산이나 전기와 같은 재물은 그 공급이나 사용의 관계가 리스테йт먼트에서 기술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개인적인 유체재물의 공급이거나 사용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제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서비스와 인간의 혈액이나 조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EC지침에서는 공업적으로 제조된 동산과 당해 동산에 따른 동산 또는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에서도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적용제외는 미가공 농산물이나 수렵물이다. 일본에서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며, 한국에서는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 그리고 적용제외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규정이 없다.

〈관리(管理)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일종을 말한다. 민법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를테면 열, 광, 원자력, 풍력 따위의 ‘에너지’도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형법상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본다.

재물(財物)은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장물·손괴(損壞) 등의 재산에 대한 죄의 객체로 되는 것이다. 유체물 뿐만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PL에서 말하는 제조물은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통설에 의하면 재물은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 혹은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본다. 또, 재물은 동산 즉 가동물(可動物: movables)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한다. 동산이란 모양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을 말한다. 다만,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을 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인체의 일부분이 분리되었을 경우에 그 분리된 부분과 인격자의 유해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단순한 학술연구의 자료에 지나지 않게 된 시체는 재물이 된다.

재물죄(財物罪)와 이득죄(利得罪)는 재산죄를 객체의 형태에 따라 구별한 명칭이다. 재산죄의 보호의 객체가 재물인 경우에는 이를 재물죄라 하고, 그 이외의 이득을 보호할 때에는 이를 이득죄라고 한다. 절도죄·횡령죄·장물죄·손괴죄 등이 전자의 예이며, 배임죄가 후자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리고 강도죄·사기죄·공갈죄 등은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